

의안번호	제498호
의결 연월일	2013년 6월 일 (제321회)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전응천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13년 6월 3일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웅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8
----------	-----

○ 발의연월일: 2013년 6월 3일

○ 발 의 자: 전웅천, 박상필, 이광희, 김동환,
장병학, 최진섭, 하재성 의원

1. 개정이유

- 2001. 7. 27.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동 조례를 시대와 여건의 변화에 적합하게 관련 조문을 보완 및 정비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 제명을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에서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함
- 정의 조항을 보완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함(안 제2조)
 - 자치법규, 입법, 입법예고 관련한 정의 규정 보완 및 신설 함
- 자치법규 관련 입법예고 대상 및 예외사항 구체화 함(안 제3조)
- 입법예고문은 충청북도 도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의무화 함(안 제5조)
-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가 필요할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명시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41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나. 관련부서 협의 : 협의 완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 없음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도민의 자치입법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충청북도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및 자구수정 등 경미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교육감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도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문의 작성) ① 입법예고문은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 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 사항을 충청북도 도보 및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이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열람 및 복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사비용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청회) ① 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입 법 예 고 문(예시)

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 호

○○○조례(규칙)를 제정(또는 개정·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충청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감

○○○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또는 개정·폐지) 취지 또는 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4.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작성하며,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른 공고사항 기재

5.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입법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함.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과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043-000-0000) 하시기 바랍니다.

관 련 법 령 발 취

□ 행정절차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⑤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1호, 2013.3.23, 타법개정]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5]